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
저감에 관한 조례안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200 |
|--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6일

발 의 자 : 정윤주, 김경이, 진선아, 정해숙,
고영옥, 권영애, 이관우, 소형준,
양순임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,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지원사업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악취방지법」 등
- 나. 협조부서 : 환경과, 청소행정과
- 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- 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성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“생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3. “사업자”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

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악취실태조사)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
3.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
4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